



**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944호 2023. 12. 27.(수)**



선 결	기관의 장

##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836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837호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
거창군 조례 제2838호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거창군 조례 제2839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19
거창군 조례 제2840호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거창군 조례 제2841호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8
거창군 조례 제2842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32
거창군 조례 제2843호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거창군 조례 제2844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거창군 조례 제2845호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	54
거창군 조례 제2846호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56
거창군 조례 제2847호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62

##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81호	거창군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66
거창군 규칙 제1382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7
거창군 규칙 제1383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1
거창군 규칙 제1384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6
거창군 규칙 제1385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91
거창군 규칙 제1386호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96
거창군 규칙 제1387호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112
거창군 규칙 제1388호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122

##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75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 132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162호 도로명주소 고시 ..... 135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1884호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 136  
거창군 공고 제2023-1886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149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3-53호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사용 제한  
안내 공고 ..... 150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836호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96	366 360	20	149	76	73	42 41	42	177 184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59	360 354	20	119	46	73	41 40	42	177 184
	3급	1 0	1 0							
	4급	4 5	3 4		1		1			
	5급	39	15	3	6	4	2	3	1	11
	6급 이하	715	341 335	17	112	42	70	38 37	41	166 173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7	3		3	3		1			
지도직 (지도사)	28	1		27	27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73
----------	----------

제출연월일	2023. 12. 15.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방안을 반영하여 면 단위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원 대비 초과정원에 대한 정비 등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세종사무소 근무, 인구증가 업무, 창포원 국가정원, 산림레포츠파크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후 상수관망 정비,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대형사업·신규·핵심 분야 인력을 증원하여 재배치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정원 조정함(안 별표 4)

- 1) 총정원: 변동없음
- 2) 부단체장 직급 상향: 4급 감1, 3급 증1
- 3) 기능인력 재배치, 현원 대비 초과정원 정비에 따른 정원 조정
  - 가) 본청: 6급 이하 증6
  - 나) 사업소: 6급 이하 증1
  - 다) 면: 6급 이하 감7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4조·제29조·제3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2. 6.~12. 11.
  -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으로 정원 증원 1명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농산물 안전분석실 정원 2명 증원하였음</li> <li>-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초기로 농업기술센터 내부적으로 인력 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분석 건수에 따라 증원 검토 필요</li> </ul>	미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837호

###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다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중전 제8조)제1항 중 “구성·운영해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계)장 각”을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장 또는 계장 각각”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거창군·거창경찰서 및 거창교육지원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담당 팀장 또는 계장 각각 1명씩 협의회의 간사로 둔다.

② 협의회는 안전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치안,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u>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u></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u>따른다.</u></p>
<p><b>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b>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u>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u>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b>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u>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u>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6조(지원사업)</b>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순찰·치안관련 안전 시설 운영,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 단체 및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분야 사업</li> <li>2. 방법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li> <li>3.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li> <li>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li> <li>5.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li> </ol>	<p><b>제6조(지원사업)</b>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u>범위에서</u>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순찰·치안관련 안전 시설 운영,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 단체 및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분야 사업</li> <li>2. 방법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li> <li>3.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li> <li>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li> <li>5.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li> </ol>

- 6.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및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 등 분야 사업
- 7. 지역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회의 등 분야 사업
- 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및 거창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 간사는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계)장 각 1명씩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 6.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및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 등 분야 사업
- 7. 지역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회의 등 분야 사업
- 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4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및 거창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 간사는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장 또는 계장 각각 1명씩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
-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신 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거창군·거창경찰서 및 거창교육지원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2조(협회의회의 회의) ① 협회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협회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3조(협회의의 운영)** ①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담당 팀장 또는 계장 각각 1명씩 협회의의 간사로 둔다.

② 협회의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치안,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62
----------	----------

제출연월일	2023.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민간부문의 의견청취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치경찰사무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함(안 제2조·제4조·제6조·제14조)
- 나.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신설함
  - 1) 설치·기능을 정함(안 제8조)
  - 2) 구성·임기·해축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 3) 회의·운영을 정함(안 제12조·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130조
  -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1.~11.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838호

###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1항제5호 중 “행복교육지구”를 “미래교육지구”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행복교육지구</u>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행복교육지구</u>”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li> <li>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li> </ol> <p><b>제3조(사업계획 수립)</b>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력하여 <u>행복교육지구</u> 교육협력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b>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b> 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li> <li>2. 마을교육공동체(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운영 활성화 지원</li> <li>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li> </ol>	<p><u>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미래교육지구</u>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미래교육지구</u>”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li> <li>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li> </ol> <p><b>제3조(사업계획 수립)</b>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력하여 <u>미래교육지구</u> 교육협력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b>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b> 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li> <li>2. 마을교육공동체(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운영 활성화 지원</li> <li>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li> </ol>



육체험활동 지원

- 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분담한다.

육체험활동 지원

- 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 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교육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분담한다.

#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63
----------	----------

제출연월일	2023.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경상남도교육청 쇄신안에 따라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함(안 제명, 제1조~제4조)

- 1)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 행복교육지구 ⇒ 미래교육지구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16.~11.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839호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 제3항) 중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를 “제조업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이노비즈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4. (생략)</p> <p>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p> <p>6. "이노비즈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p> <p>제6조(최고경영인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군수가 정하며,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p> <p>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제7조(최고근로인상) ① 군수는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로자를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근로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군수가 정하며,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p> <p>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p> <p>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p> <p>제6조(최고경영인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제7조(최고근로인상) ① 군수는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로자를 발굴하여 거창군 최고근로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p>

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조(이자 지원) ① (생략)**

1.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유재산인 공장용지에 입주하면서 경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3. 임대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생략)**

**제15조(지원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제14조의 지원은 **이노비즈기업** 또는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제16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군수는 군의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구매 및 판로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조(이자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유재산인 공장용지에 입주하면서 경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3. 임대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원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제14조의 지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제16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군수는 군의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구매 및 판로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시장개척 지원) ① 군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이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을 받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시장개척 지원) ① 군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이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을 받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64
----------	----------

제출연월일	2023.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세부기준을 현행화하고 인용 법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구체적이고 변경 가능한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6조·제7조)

1)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나. 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법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2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9.~11. 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840호

###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를 받을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보호관찰 대상자”란”을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으로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을 “제3조 각 항에 따른 사람을”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6조 중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라 <u>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지</u>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보호관찰 대상자</u>”란 거창군에 주소를 둔 「<u>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따른 <u>보호관찰 대상자</u>를 말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보호관찰 대상자</u>의 원활한 사회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제4조(사업) ① 군수는 <u>보호관찰 대상자</u>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u>보호관찰 대상자</u>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생략)</p> <p>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u>보호관찰 대상자</u>의 원활한 사회복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p>	<p><u>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지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u>를 받을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보호관찰 대상자등</u>”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둔 「<u>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u>」 제3조 각 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보호관찰 대상자등</u>의 원활한 사회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제4조(사업) ① 군수는 <u>보호관찰 대상자등</u>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u>보호관찰 대상자등</u>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생략)</p> <p>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u>보호관찰 대상자등</u>의 원활한 사회복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p>

##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116	발의일자	2023. 11. 28.
		발 의 자	표주숙,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 1. 제안이유

현행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까지 확대시켜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 가. 개정된 조례에 맞게 제명을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레이므로, 목적을 명확히 함
- 다. 종전의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등’으로 변경해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3조·제4조·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24.~11. 28.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841호

###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로 인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황토나 굵은 모래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맨발 걷기길에서 맨발 걷기를 할 권리를 가지며, 맨발 걷기와 관련된 시설을 보전·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걷기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5. 그 밖에 맨발 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117
----------	----------

발의일자	2023. 11. 28.
발 의 자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 1. 제안이유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기반시설 등 각종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를 정의함(안 제3조)
- 다.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의함(안 제4조)
- 라.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을 정의함(안 제5조)
- 마.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정의함(안 제6조)
- 바. 사무의 위탁에 관해 정의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산림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15.~11. 20.
    - 나) 예고결과: 의견 있음(미반영)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  
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842호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거나 건조 또는 발효시켜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가 감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세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기준)** 보조금 지원대상 감량기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일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전기안전 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일 것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기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감량기기로 처리된 상태로 배출할 것
2.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량기기 설치 후 감량기기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계속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감량기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나. 관련 조문: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안 제5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4)	2차연도 (2025)	3차연도 (2026)	4차연도 (2027)	5차연도 (2028)	합계
군비	40	40	40	40	40	200

### 3. 관련 의견

가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통해 처리비용을 절약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도모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40백만원

- 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최대 40만원 한도
- 나. 가정용 감량기 400,000원 × 100가구 = 40백만원

작성자 환경과장 김 성 남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3-165
----------	----------

제출연월일	2023.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그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정함(안 제5조)
  -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에 가정용 감량기기 1대 지원
- 다. 감량기기 설치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보조금 신청, 반환 등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3. 참고사항

- 나.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다. 예산조치: 2024년도 40백만원 확보예정
- 라.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마.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1.~11.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843호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를 “제13조·제16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6조제2항제2호”를 “제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교통수단등”을 “제5항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
- ⑤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용대상자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판정자. 다만,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자는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4.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군 관할구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관할구역 밖까지 왕복이용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 목적에 한정
2. 최대 2시간 대기 원칙. 다만,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접수해야 함

제8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1. 군 관할구역
2. 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모든 시·군
3.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중전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인권
  4. 교통약자서비스 및 친절교육
  5.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군수는 필요시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등에게도 제1항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의 구분란 제1호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을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u>이동지원센터</u>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⑥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p> <p>②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u>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u>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p>

제7조(이용대상자)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신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8조(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⑤ (생략)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생략)

제9조(이용기간)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제7조(이용대상자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판정자. 다만,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자는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임신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4.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군 관할구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관할구역 밖까지 왕복이용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 목적에 한정
2. 최대 2시간 대기 원칙. 다만,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접수해야 함

제8조(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이용기간)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1 제2호가목의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지원 기간

나. 별표 1 제2호나목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한 기간

**제13조(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1 제2호가목의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지원 기간

나. 별표 1 제2호나목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한 기간

**제13조(운행 지역) 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1. 군 관할구역  
2. 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모든 시·군

**3.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신 설>

#### <신 설>

#### 법령 및 정책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인권
4. 교통약자서비스 및 친절교육
5.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시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들에게도 제1항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삭 제>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제8조 관련)

구분	제출서류
1.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p>가. 중증보행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다만,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 생략 가능하다.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p> <p>다.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p> <p>라. 임산부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진단서(확인서) 및 표준모자보건수첩</p> <p>마.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p>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1)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증가에 따른 차량 구입비 지원
- 2)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지원

#### 나. 관련조문

-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안 제6조)
-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안 제15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국비	215,500	123,500	123,500	123,500	123,500	709,500
군비	684,266	401,760	428,023	455,596	484,550	2,454,195
합계	899,766	525,260	551,523	579,096	608,050	3,163,695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4년)

1.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지원: 184,000천원(국92,000. 군92,000)
2. 이동지원센터 등 운영 지원: 715,766천원

작성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66
----------	----------

제출연월일	2023. 11. 24.
제출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이동지원센터 기능 등을 정하여 거창군에 사는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기준을 개선함(안 제6조·제7조·제13조)

- 1) 운행시간 확대: 매일 24시간
- 2) 이용대상 확대: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급~3급,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
- 3) 운행지역 확대: 군 관할, 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모든 시·군, 경상남도·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 4) 군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왕복이용 요건을 정함

나. 이동지원센터 기능·운영을 정함(안 제14조·제15조)

다. 인용법 조문, 법령 재기재 등을 정비함(안 제8조·제9조·제16조, 현행 제15조, 별표 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4조의4·제14조의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899,766천원(국비215,500, 군비684,266)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0. 27.~11.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844호

###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건축직”을 “시설 직렬”로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기사”를 “건축산업기사”로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41조 조 제목 중 “높이제한”을 “높이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각 호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9미터”를 “10미터”로 한다.

별표 3 제1호바목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지도원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에 따라 새로 건축지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33조(건축지도원)</b>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u></li> <li>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li> <li>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u>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u></li> <li>4. <u>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u></li> <li>5. <u>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u></li> </ol>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②~④ (생략)</p>	<p><b>제33조(건축지도원)</b>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시설 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u></li> <li>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li> <li>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u>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u></li> <li>4. <u>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u></li> <li>5. <u>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u></li> <li>6. <u>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u></li> <li>7. <u>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li> </ol> <p>②~④ (현행과 같음)</p>
<p><b>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b> 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u></li> <li>2. <u>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u></li> </ol> <p>②~④ (생략)</p>	<p><b>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b> 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u></li> <li>2. <u>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u></li> </ol> <p>②~④ (현행과 같음)</p>

##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3-167
----------	----------

제출연월일	2023.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거창 지역 건축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지도원의 자격 요건과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건축지도원 자격 요건 완화함(안 제33조)

나. 법령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함(안 제41조)

- 1) 높이 9미터 이하 또는 9미터 초과 건축물  
⇒ 높이 10미터 이하 또는 10미터 초과 건축물

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완화함(안 별표 3)

-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u>바. 그 밖의 건축물</u> (단독주택 및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u>1미터 이상</u>	<u>&lt;삭 제&gt;</u>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건축법」 제37조·제58조·제61조
- 2)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80조의2·제86조·별표2
- 3) 「민법」 제24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완화함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30.~11.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  
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845호

###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

의안 번호	2023-168
----------	----------

제출연월일	2023.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에 따라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군 자체 사업으로 2019년까지 추진되었으나,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매매혼 장려 비판 등 논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2020년부터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폐지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1. 16.~11.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846호

###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분석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거창군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석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퇴비·액비”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 기술센터에 다음 각 호의 분석 기능을 갖춘 분석실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총칭하여 분석실이라 한다.



1. 출하(出荷)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2. 농경지 토양성분
3. 퇴비·액비 성분
4. 농업용수

② 군수는 분석실의 운영·관리업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4조(이용대상)** 분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거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뢰 등)**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분석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외 다른 용도의 증거나 확인자료,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될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의뢰목적 외의 용도로 분석 결과를 활용 할 수 없으며, 이를 광고하거나

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결과 통지서의 발급을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에 한정하여 제출된 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한다.

**제9조(분석 수수료)** ① 군수는 농경지 토양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의 분석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제9조 관련)

구분	수수료(원)	기준
1. 거창군 농업인	가. 1점 10,000 나. 1년 60,000	작물당 부과 연회비
2. 기관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	1점 348,000	작물당 부과

[별표 2]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1.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푸드 인증 신청을 하려는 농업인 2.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100분의 50
1.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푸드 인증을 받은 농업인 2.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 참여 농업인 3. 3무(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가 없는 것을 말한다)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4.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면제

#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종합분석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약, 소모품 확보 및 장비 유지관리 등

나. 관련 조문: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 출	1차연도 (24년)	2차연도 (25년)	3차연도 (26년)	4차연도 (27년)	5차연도 (28년)	합계
군 비	115	115	115	115	115	575

작성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안 번호	2023-169
----------	----------

제출연월일	2023.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신축함에 따라 종합분석실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 영농 지원으로 거창군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분석실 설치·운영, 이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제4조·제9조)

- 1) 소장에게 분석실 운영·관리업무 위임, 수수료 관련 제외
- 2) 군에 주민등록 및 경작지를 둔 농업인 이용원칙, 공익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등 이용 가능

다. 분석의 의뢰·제한·활용, 시료의 보관 및 폐기를 정함(안 제5조~제8조)

라. 분석 수수료 및 감면을 정함(안 제9조, 별표 1, 별표 2)

- 1) 농경지 토양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 분석: 무료
- 2)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군 농업인 1점 10,000원, 1년 60,000원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17조·제156조·제161조
-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115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0. 23.~11.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847호

###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해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팜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

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 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첨단장비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의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제5조제2항의 육성사업 지원
3.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스마트팜 운영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120
----------	----------

발의일자	2023. 11. 28.
발 의 자	김향란,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 1. 제안 이유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농업의 다양한 기대효과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 거창사과 노지 스마트농업 실리콘벨리 육성 등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들이 확산 추세에 있음.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라. 운영의 위탁(안 제7조)
- 마. 거창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스마트 농업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홍보(안 제9조·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9.~11. 13.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규칙 제1381호

거창군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창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적극행정 관련 변호인 및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이하 “적극행정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을 관리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거창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2. 지원 범위·시기
3. 그 밖에 지원 방법 등 적극행정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7조(지원 신청 접수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접수한 적극행정 책임관은 이를 즉시 감사업무 담당자에게 알려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제8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명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1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2. 형사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한다): 500만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2호의 경

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선임비용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2조(변호사·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제11조에 따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거창군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만 해당한다)

**제13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1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같은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16조(선임비용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의안 번호	2023-100
----------	----------

제출일자	2023. 11. 20.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 1.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여 거창군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적용범위, 다른 규칙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적극행정 책임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6조~제10조)
- 라. 변호사·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및 선임을 정함(안 제11조·제12조)
- 마.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 바. 지원의 취소, 선임비용의 반환을 정함(안 제15조·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7,300천원 추경 확보예정
- 다. 합 의: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0. 24.~11.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별지 서식에 성별항목 추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규칙 제1382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3-117
----------	----------

제출연월일	2023. 12. 15.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방안을 반영하여 면 단위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원 대비 초과정원에 대한 정비 등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세종 사무소 근무, 인구증가 업무, 창포원 국가정원, 산림레포츠파크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후 상수관망 정비,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대형사업·신규·핵심 분야 인력을 증원하여 재배치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조정(안 별표 3)

1) 본청: 증6

가) 3급 부이사관 증1

나) 4급 서기관 감1

다) 7급 행정 증2

라) 7급 행정·농업·녹지 증1

마) 8급 행정·시설 증1

바) 9급 행정·사회복지 증1

사) 9급 행정·농업·녹지·시설 증1

2) 사업소: 8급 공업·환경·시설 증1

3) 면: 감7

가) 7급 행정 감1

나) 7급 행정·농업 감2

다) 8급 행정 감1

라) 8급 행정·농업·녹지 감1

마) 9급 행정·농업 감2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2조·제3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2. 6.~12. 11.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으로 정원 증원 1명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농산물 안전분석실 정원 2명 증원하였음</li> <li>-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초기로 농업기술센터 내부적으로 인력 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분석 건수에 따라 증원 검토 필요</li> </ul>	미반영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규칙 제1383호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출산축하금란, 양육지원금란, 전입정착금란, 빈집정비지원금란,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지원	출산 축하금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면서,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하는 부 또는 모	가. 첫째 500만원 나. 둘째 500만원 다. 셋째 이후 500만원 <b>출생아 한 명당 500만원</b>
영유아 양육 지원	양육 지원금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다만, 전입세대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입한 달부터 지급하되, 전입한 달의 다다음 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	가. 첫째, 둘째: 출생일이 속하는 달 부터 20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b>30만원</b> 나. 셋째 이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30만원 지급 다만, 출생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터 지급	
전입 지원	전입 정착금	전입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전입세대	가. <del>1인 세대 20만원(생활관비 또는 학자금 지원자 제외)</del> 나. <del>2인 세대 50만원</del> 다. <del>3인 세대 70만원</del> 라. <del>4인 이상 세대 100만원</del> <u>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50만원 (생활관비 또는 학자금 지원자 제외)</u>
	빈 집 정비 지원금 지원	전입세대	<del>300만원</del> <u>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 원. 다만, 1명 전입 시 150만원 500만원 한도</u>
전입 지원	전입 대학생 생활 관비 지원금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대학 생활 관으로 전입하는 대학생	학기별 30만원 이내, 재학 중 최대 <u>4학기 지원</u> <u>8학기</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정착금, 빈집정비지원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전입정착금, 빈집정비지원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금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1) 금액 확대: 전입정착금, 양육지원금, 빈집정비지원금
- 2) 기간 확대: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금

#### 나. 관련 조문: 인구증가 세부사업 및 지원기준(안 별표)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군비	전입정착금	1,250	1,250	1,250	1,250	1,250
	양육지원금	1,980	1,980	1,980	1,980	1,980
	빈집정비 지원금	37.5	37.5	37.5	37.5	37.5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금	468	468	468	468	468
	합계	3,735.5	3,735.5	3,735.5	3,735.5	3,735.5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전입정착금: 1,250백만원 = 한 명당 50만원\*2,500명
2. 양육지원금: 1,980백만원
  - 가. 첫째·둘째 30만원\*180명\*20개월
  - 나. 셋째이상 30만원\*50명\*60개월
3. 빈집정비지원금: 37.5백만원 = 500만원\*7.5동
4.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468백만원 = 30만원\*780명\*2학기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3-102
----------	----------

제출연월일	2023. 11. 21.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 1. 제안이유

전입정착금, 양육지원금 및 빈집정비지원금을 증액하고,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금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다른 시·군과의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금 증액(안 별표)

##### 1) 전입정착금

가) 현행: 1인 세대 20만원, 2인 세대 50만원, 3인 세대 70만원,  
4인 이상 세대 100만원

나) 변경: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50만원(생활관비 또는 학자금  
지원자 제외)

##### 2) 양육지원금

가. 첫째·둘째 10만원 ⇒ 30만원

##### 3) 빈집정비지원금

가) 현행: 1인 세대 150만원, 2인 세대 이상 300만원

나) 변경: 전입세대당 500만원 한도

#### 나. 지원기간 확대(안 별표)

##### 1)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금

가) 현행: 30만원, 4학기

나) 변경: 30만원, 8학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2조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3,735.5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1. 2.~11.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규칙 제1384호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구비하여”를 “갖춰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비서류”를 “갖춰야 할 서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 기준일은 공고일로 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

제8조제1호 중 “30백만”을 “50백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기업 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2조(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b>                      ①·② (생략)                      ③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구비하여</u>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최고근로인상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 공적 증거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④ 관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 <u>구비서류</u>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군수는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관내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                      &lt;신 설&gt;</p> <p><b>제3조(산업시설용지 지원업종)</b>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업종은</p>	<p><u>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기업 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2조(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b>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갖춰서</u>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최고근로인상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 공적 증거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④ 관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 <u>갖춰야 할 서류</u>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군수는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관내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                      ⑥ <u>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 기준일은 공고일로 한다.</u></p> <p><b>제3조(산업시설용지 지원업종)</b>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업종은</p>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용자지원대상 업종
2. 식품제조 및 농·수·축·임산물가공 업종
3. 승강기 관련 연구·지원 시설 및 기업
4. 공연예술지원작품 제작업종(무대 세트·조명·의상·소도구 등)
5.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
6. 그 밖에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 중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군수는 조례 제24조의3에 따른 산업·농공단지 내 기업의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 차량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 연간 30백만원 이내
2. 차량종류: 11인승 이상
3. 지원기간: 10년 이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용자지원대상 업종
2. 식품제조 및 농·수·축·임산물가공 업종
3. 승강기 관련 연구·지원 시설 및 기업
4. 공연예술지원작품 제작업종(무대 세트·조명·의상·소도구 등)
5.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
6. 그 밖에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 중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군수는 조례 제24조의3에 따른 산업·농공단지 내 기업의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 차량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 연간 50백만원 이내
2. 차량종류: 11인승 이상
3. 지원기간: 10년 이내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8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4)	2차연도 (2025)	3차연도 (2026)	4차연도 (2027)	5차연도 (2028)	합계
군비	280	280	280	280	280	1,400

### 3. 관련 의견

2023년 제1회 거창군 규제혁신 TF회의 결과를 반영해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편의제공 및 기업체 보조금 확대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2024년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1) 예산 280백만원 = (50백만원×2개업체)+(30백만원×6개업체)

2) 지원기준

가) 업체당 지원한도 최대 50백만원, 차량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

나) 11인승이상, 최대 지원기간 10년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 정 희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3-105
----------	----------

제출연월일	2023. 11. 20.
제 출 자	경제기업과장

## 1. 제안이유

2023년 제1회 거창군 규제혁신 TF회의 결과를 반영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산업·농공단지 내 기업의 근로자에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고용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함(안 제1조~제3조)
- 나. 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의 지원 기준일 신설함(안 제2조)
- 다.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금액의 연간한도 증액함(안 제8조)
  - 1) 현행: 연간 30백만원 이내
  - 2) 변경: 연간 50백만원 이내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280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0. 19.~11. 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규칙 제1385호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량기기 지원범위)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2. 최대 40만원 한도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감량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및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감량기기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개인정보 수집·이용 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p>	<p><b>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b></p> <p>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거주여부 등) 확인</p> <p>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세대주)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p> <p>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업무 관련(재신청 금지기간 5년)</p> <p>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 관련 기관, 금융기관 등 신청 지급관련 업무 한정</p> <p><b>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b></p> <p>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및 처리</p> <p>※ 신청인은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사실 증명자료를 신청 시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p> <p>▶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p>
--	--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23-107
----------	----------

제출일자	2023. 11. 21.
제 출 자	환경과장

## 1. 제안 이유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감량기기 지원의 세부기준, 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감량기기 지원의 범위·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1)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최대 40만원 한도
- 2)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

나. 보조금의 신청, 지도점검 및 반환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3. 참고사항

나.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마.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1. 1.~11.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규칙 제1386호

###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 성분 등)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석 항목 및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제4조(분석의뢰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표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및 가축분뇨일 때는 분석시



료의 용기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한까지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분석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분석의뢰는 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⑦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5조(분석 업무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분석결과 통지 등)**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에 따라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퇴비·액비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 및 퇴비·액비 분석결과 통보서로 각각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결과의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제7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잔류농약 분석에 한정하여 제출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를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이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분석 수수료)**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라 정한다.

**제9조(수수료 감면)** 조례 별표 3에 따른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2. 65세 이상 여성농업인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분석 항목 및 성분(제2조 관련)

분석 항목명	분석 성분
1. 농경지 토양 성분	가. 토양 화학성분 분석: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 석회소요량
2. 퇴비·액비 성분	가. 퇴비 성분분석: 부숙도, 함수율 나. 액비 성분분석: 부숙도, 함수율, 질소, 인산, 칼리
3. 농업용수	가.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4. 농산물 잔류농약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는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성분(463성분)

[별표 2]

### 분석의뢰 절차(제4조 관련)

신청자	처리기관	처리기한 14일 (분석여건에 따라 다름)
	농업기술센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80%; margin: 0 auto;">접수</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80%; margin: 0 auto;">분석실시</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80%; margin: 0 auto;">분석결과서 작성</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80%; margin: 0 auto;">결과통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80%; margin: 0 auto;">접수: 수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80%; margin: 0 auto;">분석 실제 소요기간</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80%; margin: 0 auto;">분석완료 즉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분석결과서 교부</div>		

[별지 제1호서식]

## 2000년 토양검정 분석의뢰 시료 접수 대장

접수 일자	토지현황	지 적	작 물 명	연 수	의뢰접수	성명	성별	전화 번호	주 소	지 목	검사내용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서명	통보 방법	서명
	지 번									5항목	4항목			

- \* 지목: 논, 밭, 과수, 임야, 시설
- \* 검사내용: 성분검사, 유기농, 무농약, GAP
- \* 통보방법: 우편, 모바일, 직접방문

## 20〇〇년 퇴비·액비 성분검사 의뢰서

퇴비·액비 분석 의뢰서			
의 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법인소재지)	주소: 전자우편:	
	연락처	휴대전화: 사무실:	
	면적(m <sup>2</sup> )		
의 뢰 내 용	시료종류	<input type="checkbox"/> 퇴비 <input type="checkbox"/> 액비	
	축종	<input type="checkbox"/> 돼지 <input type="checkbox"/> 소·젓소 <input type="checkbox"/> 닭·오리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	
	채취    년    월    일 (생산    년    월    일)		
	검사에 필요한 자료 (원료 및 투입비율 등)		
	검사 요청 사항	<input type="checkbox"/> 부숙도 <input type="checkbox"/> 함수율 <input type="checkbox"/> 구리 <input type="checkbox"/> 아연 <input type="checkbox"/> 염분	
목적(용도)			
<p>「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위탁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p>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별지 제4호서식]

##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한 14일 이내
------	-----	-----	-------------

### □ 생산자(신청인)

단체명			법인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경영체 등록번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영농 시작연도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전자우편	@

○ 신청인 \* 생산자와 신청인이 다를 시 작성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전자우편

### □ 신청내역 \* 시료가 2건 이상 시 붙임 1에 추가 기재

신청사항	시료명	신청일	
신청내역 (붙임1 □)	건수	채취일자	채취장소
	(불임1 □)	재배단계	분석항목
	시료번호	재배환경	□ 잔류농약(463성분)
	(검사목적)	의뢰용도	□ 생육 중 □ 수확 전( 일) □ 그 밖에( )
		□ 시설 □ 노지	
		□ 거창군푸드인증 □ 학교급식·공공급식	
		□ 재배참고 □ 그 밖에( )	
결과알림 방식		□ 방문수령 □ 문자 □ 팩스 □ 우편 □ E-mail □ 그 밖에( )	
비고			

※ 신청한 작목(시료)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결과는 위에 기재한 검사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에 대한 면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석 결과는 참고용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의뢰인은 시료 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에 따른 463종 외 다른 성분에 대한 분석은 불가합니다.

신청인: (서명)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뒤쪽)

년      월      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 <붙임1> 신청 시료 목록

### □ 신청시료 목록 (2건 이상 시, 2번 시료부터 작성)

시료번호	시료명	채취일자	채취장소	분석항목
				<input type="checkbox"/> 잔류농약(463성분)
	재배단계	<input type="checkbox"/> 생육 중 <input type="checkbox"/> 수확 전( 일)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		
	재배환경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지		
	의뢰용도 (검사목적)	<input type="checkbox"/> 거창군푸드인증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공공급식 <input type="checkbox"/> 재배참고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		
<b>비 고</b>				

시료번호	시료명	채취일자	채취장소	분석항목
				<input type="checkbox"/> 잔류농약(463성분)
	재배단계	<input type="checkbox"/> 생육 중 <input type="checkbox"/> 수확 전( 일)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		
	재배환경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지		
	의뢰용도 (검사목적)	<input type="checkbox"/> 거창군푸드인증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공공급식 <input type="checkbox"/> 재배참고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		
<b>비 고</b>				

시료번호	시료명	채취일자	채취장소	분석항목
				<input type="checkbox"/> 잔류농약(463성분)
	재배단계	<input type="checkbox"/> 생육 중 <input type="checkbox"/> 수확 전( 일)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		
	재배환경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지		
	의뢰용도 (검사목적)	<input type="checkbox"/> 거창군푸드인증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공공급식 <input type="checkbox"/> 재배참고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		
<b>비 고</b>				

시료번호	시료명	채취일자	채취장소	분석항목
				<input type="checkbox"/> 잔류농약(463성분)
	재배단계	<input type="checkbox"/> 생육 중 <input type="checkbox"/> 수확 전( 일)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		
	재배환경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지		
	의뢰용도 (검사목적)	<input type="checkbox"/> 거창군푸드인증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공공급식 <input type="checkbox"/> 재배참고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		
<b>비 고</b>				

##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



###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 영지 현황**

조사번호	작물명	면적	
경작자명	경작지		
경작지주소			
토양유형	토성	토양종	배수등급
토양특성			

**□ 토양검정 결과**

단위	pH	g/kg	mg/kg	cmol+/kg	cmol+/kg	cmol+/kg	dS/m
검정범위							

**□ 비료 추천량 ( kg / m<sup>2</sup> )** 비료와 특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구분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특비 종류				소석회 (선택고도)	
	요소	유안	용성인비	용파인	염화칼리	황산칼리	우분특비	돈분특비	계분특비	혼합특비		
밭거름												
채거름												

**□ 담당자 의견**

➤

분석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과연생략)

발급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과연생략)

분양인명령

분급일자

담당자

전화

## 퇴비·액비 성분분석 결과서

퇴비·액비 성분검사 결과서 <퇴비>				
<b>위탁인</b>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b>위탁내용</b>	배출시설규모		비료관리법해당여부	
	시료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축분퇴비 <input type="checkbox"/> 가축분노발효액 <input type="checkbox"/> 퇴지 <input type="checkbox"/> 소·경수 <input type="checkbox"/> 닭·오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b>위탁내용</b>	속종	<input type="checkbox"/> 퇴지 <input type="checkbox"/> 소·경수 <input type="checkbox"/> 닭·오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료번호			
<b>분석결과</b>	접수일자			
	검사일자			
<b>분석결과</b>	용도			
	비고			
<b>분석결과</b>	항목(단위)	성적	적합여부	기준
	부숙도(腐熟度)			면적 1800㎡ 미만: 부숙도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면적 1800㎡ 이상: 부숙후기, 부숙완료
	함수율(%)			0 - 70%
	구리(mg/kg)			0 - 500mg/kg
	아연(mg/kg)			0 - 1200mg/kg
	염분(%)			해당사항없음
	질소(%)			해당사항없음
	인산(%)			
칼리(%)				
※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채취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 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실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분석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관리실장)      발급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관리실장)				

  

퇴비·액비 성분검사 결과서 <액비>				
<b>위탁인</b>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b>위탁내용</b>	배출시설규모		비료관리법해당여부	
	시료종류	<input type="checkbox"/> 가축분퇴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축분노발효액 <input type="checkbox"/> 퇴지 <input type="checkbox"/> 소·경수 <input type="checkbox"/> 닭·오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b>위탁내용</b>	속종	<input type="checkbox"/> 퇴지 <input type="checkbox"/> 소·경수 <input type="checkbox"/> 닭·오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료번호			
<b>위탁내용</b>	접수일자			
	검사일자			
<b>위탁내용</b>	용도			
	비고			
<b>분석결과</b>	항목(단위)	성적	적합여부	기준
	부숙도(腐熟度)			부숙완료
	함수율(%)			95 - 100%
	구리(mg/kg)			0 - 70mg/kg
	아연(mg/kg)			0 - 170mg/kg
	염분(%)			0.1~0.2%
	질소(%)			해당사항없음
	인산(%)		-	
칼리(%)				
※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채취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 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실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분석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관리실장)      발급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관리실장)				



[별지 제8호서식]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

신청인

단체명				법인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경영체 등록번호	
		성별		영농 시작년도	
주소	거주지				
	사업장				
연락처		팩스번호		E-mail	

의뢰인

성명		연락처	
주소			

신청내역

신청일				
신청내역	작목	채취일자	채취장소	검사단계
	검사용도	<input type="checkbox"/> 거창군부드인증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공공급식 <input type="checkbox"/> 재배참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생산 <input type="checkbox"/> 출하

분석결과

잔류농약

분석내역	분석일자	분석방법			
	검출성분명	검출농도 (mg/kg)	허용기준 (mg/kg)	적부판정	비고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위분석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농업용수)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의뢰된 시료를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에 대한 면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분석 결과는 참고용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23-112
----------	----------

제출연월일	2023. 11. 20.
제 출 자	농업기술과장

### 1. 제안이유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서식 등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분석 성분, 운영 및 관리를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분석의뢰 및 업무절차, 분석결과 통지를 정함(안 제4조~제6조)
- 다. 시료의 보관 및 폐기, 분석 수수료 및 감면을 정함(안 제7조~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9조
- 2)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0. 23.~11.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에 성별항목 추가)

#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규칙 제1387호

###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제2조 중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거창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28조제1항제1호 중 “예정금액”을 각각 “추정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건비·”를 “인건비,”로 “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를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영”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호·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
2. 그 밖의 장부

제25조 중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범위내”를 “범위”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월”을 “해당 월”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하거나 또는”을 “하거나”로 한다.

제67조 중 “제64조내지 제66조”를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8조 조 제목 “(손·망실 보고 및 처리)”를 “(손실·분실 보고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망실 및 훼손”을 “손실·분실”로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를 “손실·분실했을 때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망실”을 “손실·분실”로 “각호에”를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망실품”을 “분실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손·망실자”를 “손실·분실자”로 한다.

제117제3항 중 “3년내지 5년간의 회수 실적 당해”를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 실적, 해당”으로 한다.

제121조 중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를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b>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5조제2항과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 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7. (생략) ② (생략)</p> <p><b>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b>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u>예정금액 5,000만원</u> 이하의 공사, <u>2,000만원</u>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u>예정가격 500만원</u>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u>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b>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5조제2항과 「거창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20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 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b>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b>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u>추정금액 5,000만원</u> 이하의 공사, <u>3,000만원</u>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u>추정금액 2,000만원</u>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u>인건비, 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u></p>

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 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및 영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 1.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자. (생 )
-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 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 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

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 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 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  
가.~자. (현행과 같음)
-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 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 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출 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6. (생략)

③ (생략)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의 영수자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3,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2,0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 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의 영수자를 달

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6. (생략)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자산손실보고서(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 중인 재고 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6. (현행과 같음)

**제98조(손실·분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손실·분실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자산손실보고서(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 중인 재고 자산을 손실·분실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손실·분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 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② (생략)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내지 5년간의 회수 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재고 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분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분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② (생략)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 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에 따른다.

#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3-116
----------	----------

제출일자	2023. 12. 11.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 1. 제안 이유

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의 직무위임 및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 금액을 확대·현실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인감증명서 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병행 제출 가능토록 정비함으로써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관리자의 직무위임 금액 확대함(안 제3조)

1) 관리자(부군수) ⇒ 기업출납원(소장) 직무위임 금액 상향 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공사	5천만원 이하	현행과 같음
용역, 제조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물건 매입	5백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그 밖에	2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 나. 예산집행품의 전결 금액 확대함(안 제28조)

구분	현행	개정안
공사 또는 토지매입	3천만원 이하	현행과 같음
제조, 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매입	1천5백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그 밖에	5백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 다. 청구자의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체 제출서류 추가 (안 제51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병행 제출 가능

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용어순화 등 정비함(안 제1조~제4조, 제10조·제25조·제27조·제28조·제51조·제67조·제98조·제117조·제121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공기업법」 제9조·제12조·제34조
-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제46조
-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3조
- 4) 「인감증명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17.~12.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규칙 제1388호

###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제2조 중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거창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28조제1항제1호 중 “예정금액”을 각각 “추정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건비·”를 “인건비,”로 “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를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영”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호·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
2. 그 밖의 장부

제25조 중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범위내”를 “범위”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월”을 “해당 월”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하거나 또는”을 “하거나”로 한다.

제67조 중 “제64조내지 제66조”를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8조 조 제목 “(손·망실 보고 및 처리)”를 “(손실·분실 보고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망실 및 훼손”을 “손실·분실”로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를 “손실·분실했을 때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망실”을 “손실·분실”로 “각호에”를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망실품”을 “분실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손·망실자”를 “손실·분실자”로 한다.

제117제3항 중 “3년내지 5년간의 회수 실적 당해”를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 실적, 해당”으로 한다.

제121조 중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를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b>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5조제2항과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 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7. (생략) ② (생략)</p> <p><b>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b>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u>예정금액 5,000만원</u> 이하의 공사, <u>2,000만원</u>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u>예정가격 500만원</u>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u>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b>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5조제2항과 「거창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20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 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b>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b>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u>추정금액 5,000만원</u> 이하의 공사, <u>3,000만원</u>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u>추정금액 2,000만원</u>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u>인건비, 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u></p>

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 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및 영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 1.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자. (생 )
-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 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 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

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 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 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  
가.~자. (현행과 같음)
-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 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 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출 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6. (생략)

③ (생략)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의 영수자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3,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2,0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 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의 영수자를 달

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6. (생략)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자산손실보고서(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 중인 재고 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6. (현행과 같음)

**제98조(손실·분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손실·분실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자산손실보고서(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 중인 재고 자산을 손실·분실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손실·분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 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② (생략)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내지 5년간의 회수 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재고 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분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분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② (생략)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 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에 따른다.

#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3-117
----------	----------

제출일자	2023. 12. 11.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 1. 제안 이유

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의 직무위임 및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 금액을 확대·현실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인감증명서 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병행 제출 가능토록 정비함으로써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관리자의 직무위임 금액 확대함(안 제3조)

1) 관리자(부군수) ⇒ 기업출납원(소장) 직무위임 금액 상향 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공사	5천만원 이하	현행과 같음
용역, 제조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물건 매입	5백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그 밖에	2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 나. 예산집행품의 전결 금액 확대함(안 제28조)

구분	현행	개정안
공사 또는 토지매입	3천만원 이하	현행과 같음
제조, 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매입	1천5백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그 밖에	5백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 다. 청구자의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체 제출서류 추가 (안 제51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병행 제출 가능

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용어순화 등 정비함(안 제1조~제4조, 제10조·제25조·제27조·제28조·제51조·제67조·제98조·제117조·제121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공기업법」 제9조·제12조·제34조
-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제46조
-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3조
- 4) 「인감증명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17.~12.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훈령 제475호

###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23-
----------	-------

제출연월일	2023. 12. .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방안을 반영하여 면 단위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원 대비 초과정원에 대한 정비 등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세종사무소 근무, 인구증가 업무, 창포원 국가정원, 산림레포츠파크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후 상수관망 정비,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대형사업·신규·핵심 분야 인력을 증원하여 재배치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안 별표)

### 1) 전략담당관

가) 8급 행정·시설 증1

### 2) 행정과

가) 3급 부이사관 증1

나) 4급 서기관 감1

다) 7급 행정 증1

3) 인구교육과: 7급 행정 증1

4) 행복나눔과: 9급 행정·사회복지 증1

5) 산림과: 7급 행정·농업·녹지 증1

6) 환경과: 9급 행정·농업·녹지·시설 증1

7) 수도사업소: 8급 공업·환경·시설 증1

8) 주상면: 9급 행정·농업 감1

9) 고제면: 7급 행정 감1

9) 위천면: 8급 행정·농업·녹지 감1

- 10) 남하면: 7급 행정·농업 감1
- 11) 신원면: 8급 행정 감1
- 12) 가조면: 7급 행정·농업 감1
- 13) 가북면: 9급 행정·농업 감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27.

거창군수

###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4길 267-9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거창군수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환경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	1명	-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건물 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

##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1조 >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 의3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다. 응시연령 : 원서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라. 거주지 : 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거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 마.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바. 주말(토·일) 근무 가능자
- 사. 우대요건 :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물 운영 경력이 있는 자
- 아. 가점사항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 둘 이상의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 한 개의 가점만 적용함

### 3. 근무조건

-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나. 채용기간 : 2024. 1월 중 ~ 2024. 12. 31.
- ※ 채용 후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다. 보 수 : 시급 9,860원(주휴수당 별도, 4대보험 가입 등)
- 라. 근무조건 : 주5일, 1일 8시간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마. 근무지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119)

##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심사

- 1) 경력, 병역관련, 응시연령 등 응시 적격 여부 확인
- 2)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3)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 자기소개서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5. 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가.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 모집공고 : 2023. 12. 21. ~ 2023. 12. 29.
- 2) 원서접수 : 2024. 1. 3. ~ 2024. 1. 5.

가) 접수장소 : 거창군청 4층 환경과 (평일 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본인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1차(서류심사) : 2024. 1. 8. ~ 2024. 1. 9.

-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다. 2차(면접시험) : 2024. 1. 11.

- 1)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2) 심사내용 : 복무 및 근무자세, 직부분야 전문지식 등 점검

※ 면접 응시자 준비사항 : 신분증, 응시표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 17.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1) 근무개시(예정)일 : 2024. 1. 22. 예정
- 2)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3)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합판 사진부착)
- 나. 이력서 1부.
- 다. 자기소개서 1부.
- 라. 주민등록 등본 1부.
- 마.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이력사항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바.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 사.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차. 자격검증 동의서 1부.
- 카. 기타 개별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 타. 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14일 이내 청구할 경우 반환하여 드리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라.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마.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바.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사.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 수질관리담당(☎940-3512)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1]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부서	환경과			
분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연번	제출 목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span style="float: right;">▷ [서식2]</span>	
2	이력서 <span style="float: right;">▷ [서식3]</span>	
3	자기소개서 <span style="float: right;">▷ [서식4]</span>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 전체 주소변동내역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6	재산세 과세증명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span style="float: right;">▷ [서식5]</span>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span style="float: right;">▷ [서식6]</span>	
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span style="float: right;">▷ [서식7]</span>	
10	자격검증 동의서 <span style="float: right;">▷ [서식8]</span>	
11	기타 개별 자격증 및 경력사항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 경력증명서(해당자만)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 응시원서 작성요령(뒷면)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분야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 ② 전 화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③ 자격·면허 : 운전면허 등 기타 자격증 기재
- ④ 주요경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 ⑤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 및 응시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서식3]

# 이 력 서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부서	환경과	성 명	
			분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학 력

전공학과(인문, 자연 계열 등)	학위취득일 (학교 졸업일)	학위명	비 고

경 력

근무처(직장명)	근무기간	직위(직책)	담당업무
	~		
	~		
	~		
	~		
	~		

수상내역

수상일자	내용(훈격)	수여기관	수상경위

기술 및 자격증(자격사항)

자격종목(명)	자격증 번호	취득일(시행일)	교부기관	비고(점수)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삭제 가능





[서식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서류전형·면접시험)에 필요한 인적사항, 자격·경력확인 조회를 목적으로 함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최종학력,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주요경력 등
- 자격, 경력, 최종학력 이외의 학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관련 문서 보존 기한 완료시 폐기처분함

라. 동의의 거부

응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항목 거부 시 응시에 제한이 있으며, 선택항목 중 자격·경력의 동의 거부 시 가점 미부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제공포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사항 등]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 [서식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응시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거창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목적: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1.

### 거 창 군 수

####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대표자 : 위원장 조용병, 지회장 황인섭)
- 교섭요구 일자 : 2023. 12. 21.(목)

####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2023. 12. 28. 18:00한)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3. 12. 22. ~ 2023. 12. 28.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출처 : 거창군청 행정과 서무담당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서무담당(☎055-940-31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사용 제한 안내 공고

체육시설 개방 제한 사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1.

거 창 군 수

- 개방제한대상 : 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 개방제한기간 : 2024. 1. 1.(월) ~ 2024. 2. 14.(수)  
※ 기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개방제한사유 : 골프연습장 증개축 및 보강 공사